

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심재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1-20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일자	2021. 1. 12.
발 의 자	심재수, 김종두, 최정환, 권재경, 이재운, 신재화, 표주숙, 김향란, 이흥희, 박수자, 권순모 의원

1. 제안 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
검사위원 결원 발생 시 대처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결산검사의
차질없는 수행을 도모코자 함
- 나. 재무·회계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
위촉을 위해 검사위원 수당 증액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에 따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결원
발생시 선임방법 신설(안 제3조제6항)
- 나. 결산검사위원 수당 증액(별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, 지방자치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결산검사위원 일비 증액분 예산 반영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재무과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1. 2. 25. ~ 2021. 3. 2.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지급기준) 여비는 「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1일당 15만원을 지급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~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
<p><u>제13조(지급기준) 여비는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1일당 10만원을 지급한다.</u></p>	<p><u>제13조(지급기준) 여비는 「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1일당 15만원을 지급한다.</u></p>

~~[별표] <삭 제>~~

~~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 지급 구분(제13조 관련)~~

구 분	액 수
일 바	100,000원
여 비	국내여비규정 “별표 2” 여비 지급표 상의 부군수 상당액